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**제560호 2016. 10. 12.(수)**

|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|
| 선<br>결 | 기관의 장 |
|        |       |

## 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6-97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2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-989호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81호선)사업 실시계획  
인가를 위한 공고 ..... 4

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6-9호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6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10. 12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182-2 외 13건(부여 14건)

| 종전주소     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고시일 | 도로명<br>부여(폐지)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(별 도 열 람) 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○ 도로명주소부여

| 일련<br>번호 | 종전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| 고 시 일      |            | 도로명부여사유  | 비고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-|
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|  |    |
| 1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대동리 987-1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소만3길 35-20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마을 북동쪽 모래독걸 남쪽에<br>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<br>들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|    |
| 2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송정리 151-4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송정4길 57      | 2016-04-20 | 2016-10-12 |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  |    |
| 3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가지리 728-8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<br>개화3길 27-22   | 2009-12-28 | 2016-10-12 |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<br>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<br>째 도로            |    |
| 4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<br>도평리 462-1, 462-2,<br>462-3 |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<br>당대고개길 86 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당대고개가 있던 옛지명이 반<br>영된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5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<br>소정리 1412-1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<br>개삼길 21-17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개삼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6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<br>산수리 411 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<br>산수병곡길 378-68 | 2009-12-28 | 2016-10-12 | 북상면 산수리와 병곡리를 연<br>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7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<br>하고리 364-4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<br>고창길 182-2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하고리의 높은 재위에 있는 마<br>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<br>이름 반영            |    |
| 8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<br>무촌리 555-9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<br>수남로 1861-70  | 2009-07-02 | 2016-10-12 | 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면) 활<br>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9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<br>양지리 934 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<br>양지3길 200 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양지바른 마을이라하여 붙여진<br>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<br>째 도로             |    |
| 10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마상리 161 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지산로 1457     | 2009-12-28 | 2016-10-12 |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<br>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1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수월리 233-1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상수월길 117 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상수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<br>반영된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2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일부리 1325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지산로 1343     | 2009-12-28 | 2016-10-12 |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<br>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3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석강리 1422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석강3길 197 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<br>붙여진 세번째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4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석강리 1430                   |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<br>석강3길 198     | 2009-04-01 | 2016-10-12 |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<br>붙여진 세번째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거창군 공고 제2016 - 989호

# 군 계획 시설(교통시설 : 소로2 - 81호선)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

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 소로2-81호선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10. .

## 거창군수

### 1. 사업시행 개요

| 종류          |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|    | 시행규모 |    |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시행구간                     | 최초결정일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  | 리  | 구분   | 류별 | 번호 | 연장(m) | 폭(m) | 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군계획시설(교통시설) | 중양리 도시계획도로(소로2-81호선) 개설공사 | 거창 | 중양 | 소로   | 2  | 81 | 98.5  | 8.0  | 851                 | 거창읍 중양리406-4 ~ 거창읍 중양리 3 | 경고 1978-103호 (1978.05.01) | 2016.11~ 2017.12.31 |

2. 사업시행자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양로 103번지(상림리 64-1번지) 거창군수

3. 사업설계도 : 게재 생략

4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## 5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### ○소로 2-81호선

| 일련<br>번호 | 소재지     | 지번    | 지목 | 지적<br>면적<br>(㎡) | 편입<br>면적<br>(㎡) |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소유권 이외의 권리 |  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|
|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| 권리명        | 권리자 |    |
| 합계       | -       | -     | -  | 7,505           | 851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1        | 거창읍 중앙리 | 406-4 | 답  | 777             | 23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거창군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|    |
| 2        | "       | 406-1 | 답  | 821             | 176             | 거창읍 거열로 1길 81,<br>102호 | 이지민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3        | "       | 2-4   | 답  | 618             | 116             | 거창읍 거열로 1길 81,<br>102호 | 이지민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4        | "       | 2-3   | 답  | 951             | 120             | 거창읍 소만1길 17,<br>502호   | 주식회사<br>지엔지건설 |            |     |    |
| 5        | "       | 1-15  | 답  | 530             | 341             | 거창읍 소만1길 17,<br>502호   | 주식회사<br>지엔지건설 |            |     |    |
| 6        | "       | 1     | 대  | 2317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|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<br>철강로 328 | 흥덕산업(주)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7        | "       | 3-12  | 답  | 2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| 거창읍 중앙리 188            | 김환철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8        | "       | 1-7   | 답  | 37              | 37              | 거창읍 소만1길 17,<br>502호   | 주식회사<br>지엔지건설 |            |     |    |
| 9        | "       | 1-2   | 도  | 1170            | 27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거창군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| 10       | "       | 3     | 대  | 282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| 거창읍 중앙리 188            | 김환철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|

6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7. 의견제출 및 열람 :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(참조 : 도시건축과장)에게 서면 【우편번호 : 50132 / 주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(상림리 64-1번지) 거창군청 도시건축과】 이나 전화(055-940-3595), FAX(055-940-3579), E-mail(clovercs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- 성명 :
- 연락처 :
- 기타 참고사항. "끝".

##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10. 12.

거창군의회 의장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### 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과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개정 검토 의견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○ 상위 법령 조항 및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7조)

- 결산승인에 관한 규정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는 부분 삭제(안 제1조)
-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의 결산검사사항에 맞게 개정(안 제7조제1항)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

- 이 가능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위 법령에 부합시킴(안 제7조제2항)
-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를 “3인 이상 5인 이하”에서 “4명”으로 구체화(안 제2조)
  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의 정비

4. 입법예고기간 : 2016. 10. 12. ~ 2016. 10. 19. (7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(의회사무과, 주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우편번호 50132)에게 서면이나 메일([jhkim0829@korea.kr](mailto:jhkim0829@korea.kr)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**【☎055)940-8063】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”를 “제83조 및 제84조에”로, “결산 검사위원회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결산검사위원회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위원”을 “결산검사위원회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3인 이상 5인 이하로”를 “4명으로”로, “의회의원”을 “거창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으로, “1/3”을 “3분의 1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승락”을 “승낙”으로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중 “의장”을 “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당해 거창군의”를 “거창군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형제자매 인자는”을 “형제자매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원중에서”를 “위원 중에서”로, “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”을 “선출하되, 의회의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고가 있을



때에는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결산 검사 사항)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제10조 중 “위촉 기간중에서”를 “위촉기간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위촉기간중에서”를 “위촉기간 중에서”로, “되는 경우에도”를 “되는 때에도”로, 제2항 중 “검사 기간중에”를 “검사기간 중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」에 따른 <u>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</u>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 <p>제1조(목적) -----<br/>----- 제83조 및 제84조에 -----<br/>---- <u>결산검사위원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<u>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</u> 이 경우 <u>의회의원은</u> 감사위원수의 <u>1/3</u>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  | <p>제2조(위원의 정수) <u>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</u> ---- <u>4명</u>으로<br/>---- <u>거창군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</u>은 ---- <u>3분의 1</u>을 ----.</p>   |
|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<u>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</u>가 선임한다.</p> <p>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<u>승락</u>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<u>의장</u>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</p> <p>④ <u>의장</u>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</p> |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-----<br/><u>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창군의회</u>-----.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 <u>승낙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의회의 의장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④ <u>의회의 의장</u> -----<br/>-----</p> |
| <p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 위원은 <u>당해 거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거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친권자 또는 <u>형제자매 인자</u>는 위원이 될</p>   | <p>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 ---- <u>거창군의</u> -----<br/>--.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형제자매</u>는 -----</p>  |

수 없다.

제6조(대표위원) ① 위원중에서 대표  
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  
원이 된다.

② (생략)

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의  
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
한다.

제7조(결산 감사의 내용과 범위) ①  
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 
사항을 검사한다.

1. 세입·세출의 결산
2. 계속비,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 
의 결산
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5. 금고의 결산

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거창군  
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 
결산 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  
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 
사로 이를 갈음한다.
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제4조에 따른  
위촉 기간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  
급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제10조에 따  
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  
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  
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 
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

-----.

제6조(대표위원) ① 위원 중에서 ---  
----- 두되, 의회의 의원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 
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----  
-----.

제7조(결산 감사 사항) 위원의 결산  
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<삭제>
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-----  
위촉기간 중에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-----  
-----  
--- 위촉기간 중에서 -----  
-----  
-----

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

-----  
----- 되는 경우에도 -----.

② ----- 검사기간 중에 -----  
-----.

**【지방자치법】**

**제64조(의결정족수)**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134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7.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**

**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**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**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1.12.>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

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16.1.12.>

[시행일 : 2017.1.1.] 제84조

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 
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

| 조 항 | 제 정 안 | 의 건 | 비 고 |
|-----|--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  |     |     |

2016. . .

|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|---|
| 의 건<br>제출자 | 성 명 |           | 생년월일 | - |
|            | 주 소 | (☎. - - ) |      |   |